

# 2020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 1 추진 목적

□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 2 장학금 유형

구분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유형
신청자격	<u>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u>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 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추천인원	2명
지원내용	<u>학기당 150만원 지원(생활비형식)</u> 지원기간: '20년 1학기 ~ '20년 2학기(2개학기)
추천기준	① 소득구간(분위) 3구간 이내 ② 동점자 발생 시 심사를 거쳐 유형별 우선순위대로 선발 ③ <b>제출서류</b> · 장학금 신청서 1부, 붙임2에 해당하는 서류 1부(필수제출)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20.04.15~20.05.15)
유의사항	1. 2020-1학기 생활비형식의 장학금(무상보조)을 100만원이상 받은 학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의 계속장학생은 중복지원 불가 2. 2020학년도 1학기, 2학기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장학생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3. 장학금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전학기 장학금 환수 4. 2020학년도 1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하인 경우 계속 장학생 탈락

##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0.5.15.(금) 오후5시까지 학생취업처로 제출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문의처 : 학생취업처 장학 담당 ☎(031) 610-8724

# 2020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생 신청서

학과명	학 번	이 름	연락처

\* 공통 : 소득분위 3구간(분위) 이내 학생만 신청 가능

\* 선택 : 신청유형(아래 해당유형○ 표시)

장애인	탈북주민	가정의 보호시설 출신	학생가장, 조손가정자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주거비지원	기타

증빙서류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증빙서류 1부.(붙임2 참조)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1. 수집 · 이용 목적

- 가)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생 대상자 선발
- 나)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 소득구간 및 중복지원 확인

2.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서 약 서

1. 본인은 제출한 서류의 모든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 장학생이 탈락되며 장학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내용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전학기 장학금 환수
계속장학생	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속장학생 탈락
학적변동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본인은 위와 같이 2020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성 명

(인)

**국제대학교총장귀하**

**\*아래 구분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구분	자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2), 재원증명서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b>【학생가장 본인】</b> ▪ <b>(자격)</b>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 <b>(자격확인)</b> 가족관계증명서 ▪ <b>(제한)</b> 기혼자 지원 제외 <b>【조손가정 자녀】</b>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 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6.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he지역 유학생 ▪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 기숙사 고지서, 하숙집(고시원) 하숙(입실) 확인서, 전(월)세 계약서 (붙임3) ▪ 본인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소득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배려계층으로 확인된 자	▪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4/15~5/15)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 · 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대	월금 원
<p>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 · 고시원에서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확인자 (하숙집·고시원 주인) 주소 :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b></p>			
첨부물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 하나 제출		

